

##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입장

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/ 김 판 중

### 1. 현행 특수건강진단의 문제점의 본질에 대하여?

- 1차적 책임 : 법과 제도상의 인가와 정도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노동부
  - 2차적 책임 : 검진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있음
- 사업주나 노동계의 영향력 행사는 부수적인 사항임

### 2. 특수건강진단은 목적에 대하여?

- 기본적으로 직업병이든 아니든 질병의 조기발견, 조기예방에 주력해야 함
  - 검진기관이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지만 직업병 유무를 판정할 경우는 매우 신중해야 함.
- 직업병의 최종 판단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, 직업병 판정을 위해서는 근무이력, 작업환경, 기초 질환, 유해인자 폭로 기간 등 다양한 역학조사가 필요함
- ※ 독일의 직업병 인정기간은 보통 1년이

고, 일본의 경우도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작업관련성 질환의 경우는 보통 1년 내외임

- 지나치게 직업병 및 업무 연관성 질환여부에 관심을 두어서는 사업장에서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음
- 개선명령 및 안전보건 점검 및 감독(직업병자 1인, 유소견자 3인)

### 3. 사업주의 영향력 행사에 대하여?

- 이미,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기관 선택을 심의·의결, 근로자 대표의 요구 시 입회권 보장
- 노조가 강한 곳에서는 회사의 사과문 게재, 감시 위원회 설치, 상근근로자 요구 등을 요구하고 있음.
- 일부 노조가 없거나 영세 기업에서 기관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양심에 따라 검진하고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은 검진기관이 유지해야 할

#### 기본적 소양임

- 발제문은 사업주가 이윤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요양기관 또한 이윤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음
- 또한, 법적으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주나 노동계를 보호해서는 안됨
- 근로자도 정확한 건강검진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 : 간검사, 신경계통 검사 전 흡연 및 금주 절제

#### 4. 제3자 지불방식에 대하여?

- 특검 대상 근로자 사업장과 비특검 대상 근로자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
-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비위험업종이 위험업종 비용을 부담하는 것임
- 개별 사업주 예방 의무 두고 있는데 연대성을 강조하기는 어려움
- 이미 대기업은 정부·공단 예방 사업으로 3000억원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
- 오히려 건강진단기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
- 근골격계 예방의무, 안전 상 조치, 작업환경측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함

#### 5. 수가인상 및 특수검진 인프라에 대하여?

- 1년에 기본적으로 120개 검진기관이 약 90만 명을 검진하고 있음

- 법적으로 강제하면서 제대로 된 검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음.
- 수가는 정해진 가격이고 이는 민간기관(기업)의 지출이며, 민간기관(검진기관)의 수입임.
- 수가는 의사의 인건비, 장비, 건물 임대료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음.
- 수가(=가격)에 대한 논의는 공급측면의 비용이 적당하기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.

#### 6.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?

- 특수건강진단 부분만을 개선해서는 쉽지 않으며, 작업환경측정 제도, 일반건강진단 제도 등과 연계해야 하며, 검진항목 및 검진기관 지정 요소도 재개편해야 함
- 사업주 및 노조의 기관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할 수단 마련이 필요함
- 법령 개정은 비정규, 협력업체, 노조 미조직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.
- 노사관계에서 사업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 노조 영향력이 커서 과도한 노조 참여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제약 법률도 마련되어야 함. ☹️